

## IV

## 「공개시장운영규정」의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<b>제4조(대상증권)</b> 증권매매의 대상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3. ( 생 략 )</p> <p>4.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. <u>다만, 환매조건부 매매에 한정한다.</u></p> <p><b>제6조의2(위험관리)</b> 총재는 제4조제4호의 증권을 <u>환매조건부로</u> 매입하는 경우에는 동 증권의 신용위험이 한국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 신 설 &gt;</u></p>	<p><b>제4조(대상증권)</b> 증권매매의 대상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3. ( 현행과 같음 )</p> <p>4.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</p> <p><b>제6조의2(위험관리)</b> 총재는 제4조제4호의 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동 증권의 신용위험이 한국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 칙&lt;2022. 7. 28&gt;</u></p> <p><u>제1조(시행일)</u>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<u>제2조(유효기간)</u> 제4조제4호는 2025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</p>	<p>- 단서조항 삭제</p> <p>- 제4조제4호의 단서조항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</p> <p>- 부칙 신설</p>